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준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
발 의 자: 서준오, 강동길, 김성준,
김용일, 김지향, 남창진,
박상혁, 박영한, 박철성,
서상열, 신복자, 이경숙,
이민옥, 이병도, 이영실,
이용균, 임만균, 전병주,
최기찬, 허 훈, 황철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이 선 부담토록 규정(비용예치)하고 있어, 비용 모금기간만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재건축 초기단계부터 사업 지연 초래하고 있음.
- 도시의 기능회복 등을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안전진단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예치하는 것을 임의규정화하고, 요청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구청장이 先 지출 후 안전진단 요청자에게 후 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2항)
- 나. 시장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환수하고, 인가권자는 환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안전진단 비용 지원 및 환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함(안 제9조제3항)

다. 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원 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
단서 조항을 추가함(안 제9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
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부담해야 한다.”를 “부담하게 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통보한 경우”를 “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보한 경우”로 하고,
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장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. 안전진단 비용 지원 및 환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9조제4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제3항단서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④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자와 정산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및 환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④ -----

----- 단, 제3항단서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(현행과 같음)